



제 429국회 (정기회)
제 9차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당연퇴직 사유 추가,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 등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06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위원회 위원 당연퇴직 사유 추가	2
2.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 등	8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8
4. 개정안 부칙	2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9. 24.

3. 회 부 일 : 2025.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품·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장 및 제6장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위원회 위원 당연퇴직 사유 추가(안 제9조 제4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겸직금지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9조(겸직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위원은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u>

나. 검토의견

-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 한다)」은 제7조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경우 임용 결정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이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¹⁾.

1) 「국가교육위원회법」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

□ 한편, 현행법은 제6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면직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 법 제9조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의무,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의무 위반시 위원은 면직되거나 해촉될 수 있음³⁾.

□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겸직금지 의무,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 의무 위반시 면직이나 해촉 절차 없이 당연 퇴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의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와 관련된 사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바,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국가 교육의 기본바탕이 되는 것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2) 「국가교육위원회법」 제6조(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다만, 개정안 검토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은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려는데, 현행법 제7조에서 「정당법」 제22조4)에 따른 당원의 경우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도 해당함.
- 다음으로, 현행 「국가공무원법」⁵⁾에서는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 및 정치 운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⁶⁾,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제6

4)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5)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위원장 포함)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비상임위원의 경우 본래 소속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분됨.

6)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9조에서는 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69조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 ③ 일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거유예를 받은 경우 ④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⁷⁾, 겸직금지 및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치운동 금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별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⁸⁾, 이 경우에도 상기 언급한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유사 성격의 행정위원회를 규율하는 법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모두 당연퇴직 사유로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있으나, 겸직금지 및 정치활동 금지 위반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⁹⁾.

7)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8)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유사 성격 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 규정 비교]

구분	사유
국가교육위원회	제6조(신분보장) - 면직 및 해촉 사유[제7조 결격사유,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겸직금지, 정치활동 관여 금지 등) 위반 등] 제7조(결격사유) - <u>결격사유</u>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직선거법」 상 선거 입후보자, 정당의 당원) 및 <u>당연퇴직</u> 제9조(겸직금지 등) - <u>겸직금지</u> , 정당가입 및 <u>정치활동 관여 금지</u>
국가인권위원회	제8조(신분 보장) - 면직 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결 필요)] 제9조(결격사유) - <u>결격사유</u>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직선거법」 상 선거 입후보자, 정당의 당원) 및 <u>당연 퇴직</u> 제10조(겸직금지) - <u>겸직금지</u> , 정당 가입 및 <u>정치운동 관여 금지</u>
국민권익위원회	제15조(결격사유) - <u>결격사유</u>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직선거법」 상 선거 입후보자, 정당의 당원) 및 <u>당연 퇴직</u> 제16조(신분보장) - 면직 및 해촉사유[제15조 결격사유,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결 필요), <u>겸직금지의무 위반</u>] 제17조(겸직금지) - <u>겸직금지</u>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8조(신분보장) - 면직 또는 해촉 사유(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결격사유,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른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제9조(겸직금지) - 영리 목적 업무 종사 금지, <u>겸직 금지</u> , <u>정치활동 관여 금지</u> 제10조(결격사유) - <u>결격사유</u> (정당의 당원,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3년 이내 종사하였던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u>당연 퇴직</u>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7조의5(신분보장) - 면직 또는 해촉 사유(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결격사유,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의6(겸직금지 등) - <u>겸직금지</u> , 영리업무 종사 금지, <u>정치활동 관여 금지</u> 제7조의7(결격사유) - <u>결격사유</u>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직선거법」 상 선거 입후보자, 정당의 당원) 및 <u>당연 퇴직</u>

9) 면직 또는 해촉사유에는 해당함.

- 이와 같이 당연퇴직의 경우 징계절차 등 별도의 인사상 처분 없이 법령에 의해 신분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주요 법에서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등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현행법에서는 겸직금지 의무 또는 정치활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의 결과로 해임 또는 파면이 될 수는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의무 위반 그 자체로 당연퇴직하도록 하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 등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¹⁰⁾.
- 국가교육위원회는 겸직금지 및 정치활동 금지 의무 위반시 현행법에서 면직 또는 해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검토 의견임.

10) 헌법재판소는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므로 공직과 사익 간의 비례성 형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당연퇴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무담임권 보장과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한하여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2020헌가8(2022.12.22.)].

2.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 등(안 제25조 및 제27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등”)에게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금품 등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u> ① <u>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은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u> ② <u>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신 설>	된다. 제27조(벌칙)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나. 검토의견

1) 청렴의무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등” 중 위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및 연구전문위원의 경우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의 본래 소속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경우도 있음.
-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청렴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되고¹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

11)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에 관한 법률」 12)과 「형법」 13)에서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인 신분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등”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청렴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의무를 부과하게 되고, 이를 위반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경우 면직되거나 해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의 청렴의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13) 공무원의 직무와 관한 죄 중 뇌물 관련 죄

- 국가교육위원회와 유사 성격의 행정위원회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과 사무처 직원 등에 대한 청렴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금융위원회¹⁵⁾ 등에서 구성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성격 위원회의 청렴 의무 조항 비교]

구 분	규 정
국가인권위원회	※ 청렴의무 조항 없음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의무 조항 없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u>심의위원</u> , 제23조에 따른 <u>특별위원</u> , 제27조제2항에 따른 <u>사무처의 직원(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u>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u>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청렴의무 조항 없음

2) 비밀유지 의무

-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비밀 엄수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

14) 법 시행령에서는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등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계 사유가 되고¹⁶⁾,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¹⁷⁾과 「형법」¹⁸⁾

16)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에서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민간인 신분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등”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5조¹⁹⁾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가 필요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중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등이 포함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와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무는 내부논의 과정 중인 경우, 비공개되거나 공개가 제한될 필요성이 있는 등 높은 공적 책임성이 필요하므로 비밀유지 의무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개정안에 따를 경우 민간인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등”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재수단 마련을 통해 직무상 비밀누설 및 도용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행위 주체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18)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9)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5조(회의)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있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 성격의 위원회 중에는 이보다 형량이 낮거나 행위 주체를 달리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비밀유지 의무 관련 입법례 비교]

구분	구성요건	처벌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등”은 <u>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사용</u> 하여서는 아니 된다.	<u>3년 이하의 징역</u> 또는 <u>3천만원 이하의 벌금</u>
형법	<u>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u>	<u>2년 이하의 징역</u> 이 나 <u>금고</u> 또는 <u>5년 이하의 자격정지</u>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u>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u>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u>3년 이하의 징역</u> 또는 <u>3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u>비밀을 누설한 사람</u>	

[유사 성격 위원회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 비교]

구 분	규 정
국가인권위원회	-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u>위원</u>,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u>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u>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u>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비밀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시 처벌 조항 없음
국민권의위원회	-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u>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u>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u>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u>는 <u>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u>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제68조의2(자료요청 등) ③ 제1항20)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u>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 제88조의2(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u>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② <u>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 처벌조항 없음

개인정보 보호위원 회	-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u>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3. 제60조를 위반하여 <u>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u>
----------------------------	---

□ 국가교육위원회는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사무처장, 사무처 직원 및 연구전문위원이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은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더욱 엄격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개정안의 경우 법 적용시 해석상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13조 제1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공무상 비밀 누설죄(제127조²¹⁾), 뇌물에 관한 죄(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²²⁾)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공무원으로 보는 사무처 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21)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u>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u>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사무처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목적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임²³⁾.
- 동 개정안은 제25조제2항과 제27조에서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을 신설하면서 이와 별도로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개정안 제27조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퇴직한 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형법」 제127조에서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⁴⁾.

23)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746p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사 성격의 위원회의 경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으로 「형법」 중 일부조항을 열거하지 않아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모두 의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업무의 높은 공적 책임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경우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조되므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교육위원회 또한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2)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 또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에 관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을 위한 기구에 불과하고, 전문위원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바²⁴⁾,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4)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5)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유형 중 의결에 기속력이 있어 행정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경우 심의 또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보다는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고, 의결에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원회 중에서는 심의절차가 임의적인 자문위원회 위원보다 심의절차가 필수적인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임²⁶⁾.
-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자문, 전문위원의 조사·연구의 경우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절차 또한 필수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국가교육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의 경우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을 위원으로만 규정하거나, 전문위원 또는 직원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개정안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참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유사 성격 위원회의 공무원 의제 규정 내용 비교]

구 분	규 정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회의 <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u>은 「<u>형법</u>」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정책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사무처 해당 없음.</u>
국민권의위원회	- 위원회의 <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u>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u>형법</u>」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u>형법</u>」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6)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750p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준용 ※자문기구, 사무처 해당 없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위원회의 <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u>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심의위원장을 제외한다),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조직 해당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호위원회의 <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u>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소관사무 또는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에 관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을 하는 기구에 불과한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기준²⁷⁾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²⁸⁾.

(3)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

□ 사무처장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법」 제20조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제외할

27)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함.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8) 국가교육위원회 및 소속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경우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필요가 있음.

- 사무처 직원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법」 제20조에서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²⁹⁾,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사무처 직원의 경우 모두 공무원(국가직공무원과 교육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향후 비 공무원이 사무처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³⁰⁾.

2) 벌칙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개정안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법률에서 형벌을 규정할 때에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 대상 행위, 행위 주체 및 형사처벌의 정도를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³¹⁾.

29) 「국가교육위원회법」 제20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소속 장관은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30)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사무처 직원 외에도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중인데, 이들의 채용을 위한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채용되었다고 함. 따라서 이들을 사무처 직원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채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1)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753p

- 개정안의 경우 법률만으로는 ‘직원’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의 내용인 ‘명확성 원칙’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개정안의 경우 직원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 보다 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구)소비자기본법」에서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면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는데,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 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벌칙 적용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내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³²⁾³³⁾.

[소비자기본법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

32) 제20대 국회에서 박맹우 의원이 동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0974)」을 발의하였고, 동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대안의 경우 2018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동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었음.

33) 한편, 제18대 국회에서 같은 이유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9307)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됨에 따라 현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 정 전	개 정 후
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u>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u>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2. <u>제35조제1항제2호·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u> 3. <u>제52조제1항·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u> 4.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4.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및 형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⁴⁾.
- ☐ 개정안의 경우 하위법령(대통령령)으로 위임규정이 있는데, 대통령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사례가 많으나³⁵⁾, 동 개정안의 경우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 보다 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함께 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4)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5)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821p

□ 한편, 개정안의 경우 벌칙 및 형사 처벌에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의 적용례를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